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업무 매뉴얼

2025. 4. 21.

공정거래위원회 공 시 점 검 과

이 문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업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하여 배포하는 매뉴얼입니다. 본 매뉴얼의임의 수정 및 재배포 시 해당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니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u>기울임 및 밑줄</u> 친 부분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

☞ 공시 업무 매뉴얼은 공정위 홈페이지(정책·제도/정책자료)에서 검색 후 다운로드 가능

- 목 차 -

1. 도입배경 및 법적근거 001
2. 주요용어 설명 002
3. 적용대상 회사 003
4. 공시유의사항004
5. 공시항목 및 세부공시내용 006
6. 공시의무 위반 시 제재 082

모양하다 및 법적근거

도입배경

- □ 비상장회사는 일반적으로 상법상의 주주고지의무 등을 제외 하고는 특별한 공시의무가 없음
- □ 비상장회사의 불투명한 경영행태가 동일집단 상장회사의 소액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우려
- □ 특히 대규모 기업집단의 비상장회사는 일반 독립 비상장회사와는 달리 기업집단 내 다른 상장회사와 복잡한 출자관계로 얽혀 있음
- ⇒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도 도입('05.4.1.)

법적근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7조
 - o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대상 회사의 범위, 공시사항 및 공시시기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 관련 중요 사항 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
 - o 공시대상 회사, 공시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시시기 등 세부사항을 고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 ※ 고시. 과태료 관련 규정은 기업집단 현황공시와 동일

※ 아래 설명 외 용어 설명은 기업집단 현황공시 업무 매뉴얼 참고

자기자본 산정방법

- □ 최근 사업연도말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에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을 말함
 - 다만, 최근 시업연도말 경과 후 상법 제522조(합병), 제527조의2(간이합병),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및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 분할합병)에서 규정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실의 효력발생일의 재무제표상 자기자본 금액을 말함(「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3항)
- ☞ 자기자본 = 자산총액 부채총액 ± 최근 시업연도말 경과 후 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

자산총액, 자기자본 기준의 적용

-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자기자본액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
 - o 즉, 2024. 12. 31일 결산(감사보고서)에 따른 자산총액과 자기자본은 2025. 4. 1.부터 2026. 3.31. 까지 발생하는 중요사항 변동에 대하여 공시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

새로 설립된 회사의 자산, 자본기준

□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 대신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함

자본잠식 회사의 자기자본

□ 자기자본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자기자본은 최근의 자본금 으로 봄

적용대상 회사

-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국내) 중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이하 '비상장회사'라 한다)
 - o 다만, 특수관계인(자연인인 동일인 및 그 친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 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계열회사(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경우는 제외)는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공시대상에 해당
 - o 금융·보험사는 비상장회사 공시제도의 적용을 제외

◎ 금융·보험사는 공정거래법에서 정의하고 있음

- 공정거래법 제2조 제10호 :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란 「통계법」제22 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 험업을 말한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 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 ◎ 비상장 금융회사는 관련 금융업법규에 근거하여 공시하고 있음

- 정기공시 : 영업보고서 등

- 수시공시 : 거액손실·금융사고, 적기시정조치 등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

건전성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연도 중 편입·제외된 경우

- □ 공시의무 발생은 계열 편입ㆍ제외통지일 기준
 - 0 연도 중에 지정제외된 기업집단은 지정제외된 날부터 공시의무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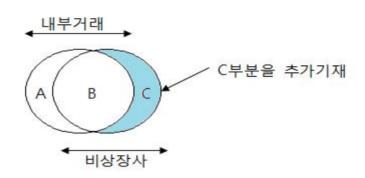
공시양식

- □ 공시양식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표준서식을 준용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름
 - o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및 회사의 경영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의 공시양식은 현재 자본시장법령에 근거하여 공시되고 있는 양식을 준용
 - 공시양식 작성 시 유의사항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법령상의 공시양식 작성 시 유의사항과 동일
 - o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동에 관한 공시양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해석은 자본시장 법령상의 관련규정 해석과 다를 수 있음
 - 예)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주식보유 변동에서 "최대주주"는 공정거래 법령상의 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함 으로써 자본시장법령상의 "최대주주" 개념과 다름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상의 공시가 중복되는 경우

- □ 공정거래법상 공시사항이 자본시장법상의 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시하면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ㅇ 다만, 공정거래법상의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을 표시하여야 함
- □ 공정거래법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규정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은 제외
 - ㅇ 공시양식이 내부거래공시와 동일한 경우 내부거래공시로 갈음 하고, 기타 란에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사항에도 해당 된다는 것을 표시

o 두 공시 간의 양식이 상당히 유사한 경우 내부거래공시를 하면서 내부거래 양식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추가 기재할 수 있음



공시기한

- □ 공시사항은 사유발생일부터 <u>7영업일*</u> 이내(초일불산입)에 공시 하여야 함
 - ※ 단,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변동 공시는 분기 공시(지분 변동일이 속한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 * 영업일 :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

예) 사유발생일 : 4월 1일(월) / 공시기한 : 4월 10일(수)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사유발생일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_
7	8	9	10	11	12	13
_	5일차	6일차	7일차			

- o 전자공시시스템 상 전자문서 제출가능 시간은 07:30 ~ 19:00 이나, 18:00 이후 제출 시 다음 업무일에 공시처리됨
- o 공시사유발생일은 다음을 의미
-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보유주식 등의 변동이 있을 때
- 회사의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결정이 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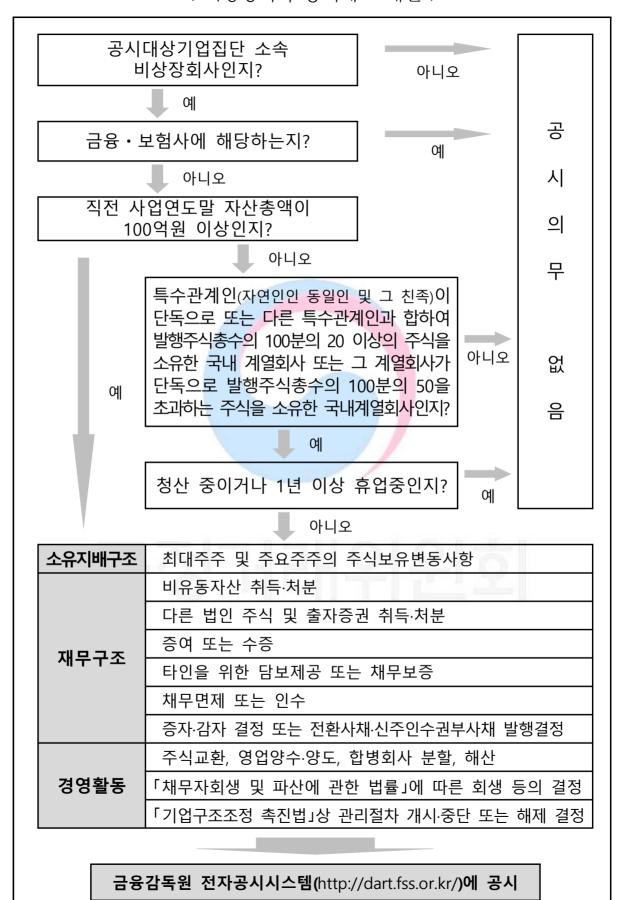
공시사항

- □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동현황
 - o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주식보유 변동사항
- □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 o 비유동자산 취득·처분 결정사항
 - o 다른 법인(국내·외 계열회사를 제외한 국내·외 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또는 처분 결정사항
 - ㅇ 증여 또는 수증,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 제외) 결정사항
 - o 채무면제 또는 채무인수 결정사항, 증자 또는 감자 결정사항,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결정사항

□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o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360조의15(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 제527조의2(간이합병) ·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 · 분할합병)의 규정에 따른 결정사항
- o 상법 제517조(해산사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
- o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 종결 또는 폐지 결정사항
- o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7조(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 · 중단 또는 해제 결정사항

〈 비상장회사 공시제도 개관 〉



공시항목별 상세설명

①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변동

- O 최대주주(해당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하며,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산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를 포함)의 보유주식비율이 총 발행주식수 기준 100분의 1이상 변동이 있을 때 공시
- o 합병, 신주발행, 주식매각 등 변동 사유는 불문하나, 보유주식 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 변경되지 않으면 공시의무는 없음
- O 동일인측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동일<mark>인</mark>측 최대주주(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의 주식수나 지분율 합계의 변동이 없더라도 그 구성원 간 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공시
 - * 동일인측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동일인측 보유주식비율에 변 동이 있더라도 최대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변경되지 않으면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변동' 공시의무는 없음

- O 변경된 주주만 공시할 경우 공시이용자의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시양식에 따라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변경 전·후 지분율 현황을 공시
- o 개별 주주별 지분율 란에는 주식의 종류별(보통주, 우선주) 지분율을 기재
 - * 주식의 명칭, 종류와 관계없이 보통주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고, 우선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의미

- O 소계 및 합계의 보통주, 우선주 지분율 란에는 주식의 종류별 지분율을 기재하고 합계 지분율 란에는 전체 총 발행 주식 수 기준 지분율을 기재
- o 지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기재
- ☑ 공시사유발생일 즉, **지분 변동일**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각 목 에서 규정한 날로 함
-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받은 날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 해당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날)
- 주식회사의 신주를 유상취득<mark>하는 경우에는 주식대</mark>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 주식회사외의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지<mark>분양수</mark>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 그 외의 경우로서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 그 밖의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주식소유비율의 변동이 확정되는 날

공정기태위원회

〈작성양식 1〉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변동

(단위 : 주, %, 천원)

|--|

			변동내역						취득/처분			
	T.T.C.	동일인과의		주식의	변동	등 전	증	감	변동	후	7 7 7	/서군
구분	주주명	관계	변동일	종 류 (보통주 /우선주)	주식수	지분율 (A)	주식수	지분율 (B=C-A)	주식수	지분율 (C)	금액	단가
F		1)									2	3
땅 일 이												
동일	자	기주식										
및 동일 인 인 관 련 자기주식		보통주			- 1							
	노계(A)	_	우선주							_	_	
				합 계			7 1					
	4	_										
동 최일 이		_										
동일인측이 아닌				보통주								
자 아 닌 소계(B)		7.	우선주		110	e I	6		- 11	_	_	
			합 계		8							
				보통주			- 1			- 11		
	기타 소	≥계(C)	-	우선주							_	_
			합 계									
				보통주		100		100		100		
	전체 (A+E		_	우선주		100		100		100	_	_
	-	·		합 계		100		100		100		

<기재요령>

- 1. ①에는 본인,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회사(국내, 국외) 등으로 기재
- 2. ②,③에는 액면가가 아닌 취득/처분의 실제금액을 기재. 총액 거래의 경우에는 주당 거래 금액을 역산하여 기재
- 3. ④에는 동일인측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기재하고, 동일인측이 최대주주인 경우 '-'처리

② 주요주주의 주식보유 변동

□ 공시사유발생

- 매분기 동안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최다출자자인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 주요주주의 보유주식비율이 발행주식총수 기준 100분의 1이상 변동된 경우, 매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258·11월 말일까지)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변동 내역을 공시
 - * [예시] '22.1.10. 주요주주의 보유주식비율이 총 발행주식수 기준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공시→ 1/4분기 종료 후 5월 말일까지 공시
- 주요주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 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함
 - * '임원의 임면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의 기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참조
- o 합병, 신주발행, 주식매각 등 변동 사유는 불문하나, 보유주식 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보유주식비율이 변동되지 않으면 공시의무는 없음

- 분기 동안 주요주주의 보유주식비율이 여러 차례 변동된 경우 증감내역을 합산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직전 분기말 대비 총 발행주식수 기준 100분의 1이상 변동되었으면 공시
 - * 분기 내 변동이 여러 차례 발생한 경우 변동일은 마지막 변동일을 기재

- 변경된 주주만 공시할 경우 공시이용자의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시양식에 따라 전체 주요주주를 대상으로 변경
 전·후 지분율 현황을 공시
- O 지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 까지 기재
- ☑ 공시사유발생일 즉, **지분 변동일**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각 목 에서 규정한 날로 함
-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받은 날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 해당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날)
- 주식회사의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 주식회사외의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 그 외의 경우로서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 그 밖<mark>의 사</mark>유로 주식소유비율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주식소유비율의 변동이 확정되는 날

공정기태위원회

〈작성양식 2〉

주요주주의 주식보유 변동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	-----	------	------	-------

(단위 : 주, %)

7.7.D	동일인과의	변동내역								
			주식의	전기말		증감		당기말		
주주명	관계	변동일	종 류 (보통주 /우선주)	주식수	지분율 (a)	주식수	지분율 (b=c-a)	주식수	지분율 (c)	
	1	2	3		4		4		4	
		/	- Aller							

<기재요령>

- ※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최대주주를 제외한 주요주주의 주식보유 변동 내역을 공시
- 1. 최근 2개 분기분을 당기말, 전기말로 구분하여 기재 예) 2025.5월에 공시하는 경우 당기말은 2025.3월 말 기준, 전기말은 2024.12월 말 기준
- 2. ①에는 본인, 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회사(국내, 국외) 등으로 기재, 동일인 측이 아닌 경우 '-'으로 기재
- 3. ②에는 지분변동일을 기재
- 4. ③에는 주식의 명칭, 종류와 관계없이 의결권 있는 주식은 보통주, 의결권 없는 주식은 우선주로 기재
- 5. ④에는 주식의 종류별 지분율을 기재

③ 비유동자산 취득결정

□ 공시사유발생

- o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비유동자산의 취득에 관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 계약 건별(이사회/대표이사 결정 건별) 금액을 기준으로 함
- o 취득 중인 자산(건설 중인 자산, 투자자산 등)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다면 이에 대한 결정 사항도 공시대상임
-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운용리스 취득도 공시대상에 해당
- 리스계약기간 중 리스료 변경에 따른 자산가액 변경은 취득 공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o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모집합 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함)를 통한 취득 포함

- o 취득가액에는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단일 취득 결정 금액을 기재
- 운용리스는 리스자산 취득시점의 장부가액을 기재
- 회사와의 관계 란은 동일인, 친족(<u>배우자</u>, 혈족4촌 이내, 인척 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동일인측이 아닌 주주, 기타 등을 기재
- o 취득방법은 직접취득, 신탁계약을 통한 취득, 사모간접투자 기구를 통한 취득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O 공시사항의 결정을 이사회결의로 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외이사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법인의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를 기재
- o 상기 기재사항 외의 비유동자산취득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3〉

비유동자산 취득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취득 목적물				
2. 취득 목적물 규모				
3. 취득가액 (원)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 (원)	7.7		
- 자산총액 대비 (%)				
4. 거래상대방				
- 회사와의 관계				
5. 취득목적				
6. 취득예정일	7.1	4491.	410	
7. 주요계약조건				
8. 자본조달방법				
9. 취득방법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사회에사 참석여구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참석여부	감사위원)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	<u> </u> 2할 사항			
※ 관련공시일				

④ 비유동자산 처분결정

□ 공시사유발생

- o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비유동자산의 처분에 관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 계약 건별(이사회/대표이사 결정 건별) 금액을 기준으로 함
- o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모집합 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함)를 통한 처분 포함
- O 운용리스의 사용계약 중단·만료 시 감가상각 되고 남은 리스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공시대상에 해당

- O 처분가액은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단일 처분 결정 금액을 기재
- o 회사와의 관계 란은 동일인, 친족(*배우자*, 혈족4촌 이내, 인척 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1,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동일인측이 아닌 주주, 기타 등을 기재
- O 처분방법은 직접보유자산의 처분, 신탁계약을 통한 보유자산의 처분, 사모간접투자기구를 통한 보유자산의 처분으로 구분하여 기재
- o 공시사항의 결정을 이사회결의로 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외이사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법인의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를 기재

o 상기 기재사항 외의 비유동자산처분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4〉

비유동자산 처분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처분 목적물					
2. 처분 목적물 규모					
3. 처분가액(원)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	등액 (원)				
- 자산총액 대비 (%)					
4. 처분대상 비유동자산의	평가가액(원)				
5. 거래상대방					
- 회사와의 관계					
6. 처분목적					
7. 처분예정일	-irai	A I -	JL. I		
8. 처분방법	4991	41	0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MAGM BAGT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참석여부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	 할 사항				
※ 관련공시일					

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공시사유발생

- o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타법인(국내·국외 계열회사 제외) 발행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에 관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 이사 등의 결정사항이 있을 때 공시
 - * 취득하기로 한 타법인 주식 전부의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함
- O 결정 당시 주식 등 발행법인이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공시 대상에 해당함
 - * 기업집단 현황공시 매뉴얼 4. 주요용어 설명 참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모간접 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함)를 통한 취득을 포함

- o 회사와의 관계 란은 동일인측이 아닌 주주, 기타 등을 기재
- o 취득금액은 해당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단일 취득 결정 금액을 기재
- 대규모법인여부 기재 시 취득 대상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발행 회사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 1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으로 기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미해당'으로 기재
 - O 취득방법은 현금취득, 전환사채 전환권행사에 의한 취득, 신탁 계약을 통한 취득, 사모간접투자기구를 통한 취득 등 해당 취득방법을 기재

- o 자본잠식법인은 자기자본에 최근의 자본금을 기재하고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상기 자기자본은 자본금임을 기재
- O 상기 기재사항 외의 타 법인출자와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공정기래위원회

〈작성양식 5〉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

		회사명(국적) 대표이사
1. 발행회사		자본금 (원) 회사와의 관계
		발행주식총수(주) 주요사업
	취득 주식수 (주)	
	취득금액 (원)	
2. 취득내역	자기자본 (원)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 (주)
		지분비율 (%)
4. 취득방법		
5. 취득목적		
6. 취득예정일자		
7.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 (명)	
참석여부	불참 (명)	
- 감사(감사위	위원) 참석여부	
9. 기타 투자판	단단에 참고할 사항	171212101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 원)

구 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해당 연도						
전년도						
전전년도						

⑥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 공시사유발생

- o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타법인(국내·국외 계열회사 제외) 발행 주식 및 출자증권의 처분에 관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 이사 등의 결정사항이 있을 때 공시
 - * 처분하기로 한 타법인 주식 전부의 처분금액을 기준으로 함
- o 결정 당시 주식 등 발행법인이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시 대상에 해당함
 - * 기업집단 현황공시 매뉴얼 4. 주요용어 설명 참고
- o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함) 또는 사모간접 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함)를 통한 처분을 포함

- o 회사와의 관계 란은 동일인측이 아닌 주주, 기타 등을 기재
- O 처분금액은 해당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단일 처분 결정 금액을 기재
- 대규모법인여부 기재 시 처분 대상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발행회사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으로 기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미해당'으로 기재
- o 자본잠식법인은 자기자본에 최근의 자본금을 기재하고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상기 자기자본은 자본금임을 기재

O 상기 기재사항 외의 타 법인출자지분 처분과 관련하여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6〉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	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	1	1		
		회사명(국적)	회사명(국적)		표이사	
1. 발행회사		자본금 (원)		회시	·와의관계	
		발행주식총수(주)		주	요사업	
	처분주식수 (주)					
	처분금액 (원)					
2. 처분내역	자기자본 (원)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3. 처분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 비율		소유주식수	(주)			
		지분비율	(%)			
4. 처분목적						
5. 처분예정일자			1 0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5 7	o I	
- 사외이사	참석 (명)					
참석여부	불참 (명)				197	
- 감사(감사	위원) 참석여부					

⑦ 증여결정

□ 공시사유발생

o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이상의 증여에 관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o 회사와의 관계 란은 동일인, 친족(<u>배우자</u>, 혈족4촌 이내, 인척 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동일인측이 아닌 주주, 기타 등을 기재
- o 증여목적물은 금전, 부동산(임야), 동산(회원권), 유가증권, 기타 재산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증여되는 재산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재
- O 자본잠식법인은 자기자본에 최근의 자본금을 기재하고 기타 란에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의 자본금임을 기재
- o 공시사항의 결정을 이사회결의로 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외이사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법인의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를 기재
- 상기 기재사항 외의 증여와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 o 증여가액은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로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장부가액으로 함

〈작성양식 7〉

증여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						
1. 수증인(심	낭대방)				(회사와의	리 관계)	
2. 증여목적	물					·	
3. 증여가액	(원)						
- 자기자본	본 (원)						
- 자기자본	: 대비 (%)						
4. 결정일(0	사회결의일)						
- 사외이시	. 차서 어 ㅂ	참석 (명)				
- NIDON		불참 (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A			
※ 관련공시	일			7 /			

【증여상대방별 내역】

수증인(상대방)	관계	증여일	증여금액(원)	증여목적물	해당 사업연도 총 증여금액(원)
				410	9
- (

⑧ 수증

□ 공시사유발생

o 자기자본의 100분의 1이상의 증여를 받기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이 결정한 때 공시

- o 회사와의 관계 란은 동일인, 친족(*배우자*, 혈족4촌 이내, 인척 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동일인측이 아닌 주주, 기타 등을 기재
- o 수증목적물은 금전, 부동산(임야), 동산(회원권), 유가증권, 기타 재산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증여받는 재산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재
- o 자본잠식법인은 자기자본에 최근의 자본금을 기재하고 기타 란에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의 자본금임을 기재
- O 상기 기재사항 외의 수증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 o 수증가액은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로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장부가액으로 함

〈작성양식 8〉

수 증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증여인				(회사와의 괸	·계)	
2. 수증목적	물					
3. 수증가액	(원)					
- 자기자논	분 (원)					
- 자기자본	를 대비 (%)					
4. 수증일						
5. 기타 투기	다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일	A				

【수증상대방별 내역】

증여인	관계	수	-증일	수증금액(원)	수증목적물	해당 사업연도 총 수증금액(원)
		1				

공정기래위원회

⑨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결정

□ 공시사유발생

- o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O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사업을 위하여 발주처 또는 입주예정자 등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o 타인이 아닌 자기를 위한 담보제공은 해당되지 않음
 - 예) 부동산 임대차거래 시 임차보증금 등

- O 채무자는 담보제공에 대한 수익자를, 회사와의 관계 란은 동일인, 친족(*배우자*, 혈족4촌 이내, 인척 3촌 이내), 기타친 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 회사, 동일인측이 아닌 주주, 기타 등을 기재하며, 채권자는 금융기관 등 담보설정권자를 기재
- o 대규모법인여부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최근 사업 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최근 사업 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함
- O 담보제공 총 잔액은 결정일 현재 타인을 위한 담보설정 총 잔액을 기재
- o 자본잠식법인은 자기자본에 최근의 자본금을 기재하고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상기 자기자본은 자본금임을 기재
- o 상기 기재사항 외의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9〉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	I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u> </u>								•
1. 채무자								
- 회사와의	관계							
2. 채권자								
3. 채무(차입	!)금액 (원)							
		담보설정금액 (원)						
		자	기자본 (원)					
		자기자본 대비 (%)						
4. 담보제공	내역	대규	구 <mark>모법인</mark> 여부					
		담 <mark>보</mark> 제공재산			10			
			시작의	일	· 1			
		담보제공기	종료일	일		A		
5. 담보제공	총 잔액 (원	!)			1			
6. 이사회결	의일(결정일)			1				
- 41010141	차서어ㅂ		참석 (명)					

【 채무자별 담보제공 잔액】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채무자	관계	담보설정잔액(원)	담보제공기간	담보제공재산	비고

불참 (명)

⑩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 공시사유발생

- o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에 관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o 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은 제외
- O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사업을 위하여 발주처 또는 입주예정자 등에게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는 제외

- 채무자는 담보제공에 대한 수익자를, 회사와의 관계란은 동일인, 친족(*배우자*, 혈족4촌 이내, 인척 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 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 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동일인측이 아닌 주주, 기타 등을 기재하며, 채권자는 금융기관 등 담보 설정권자를 기재
- o 대규모법인여부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우 최근 사업 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최근 사업 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함
- O 채무보증 총 잔액은 결정일 현재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총 잔액을 기재
- o 자본잠식법인은 자기자본에 최근의 자본금을 기재하고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상기 자기자본은 자본금임을 기재
- O 상기 기재사항 외의 채무보증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10〉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2101715164		=1.11.04				01.71		71 74 11 7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	일 사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채무자									
- 회사와의 관계									
2. 채권자									
3. 채무(차입)금액	(원)								
		채드	구보증	금액 (원)					
		자기자본 (원)							
		자기자본 대비 (%)							
4. 채무보증 내역		대규 <mark>모법</mark> 인 여부							
		채무		시작	일	1			
		보증기간	<u> </u>	종료(일				
5. 채무보증 총 잔	액 (원)	1					1		
6. 이사회결의일(결	!정일)				1				
기 이 이 기 - 〒L II /	7 H		참석	(명)					
- 사외이사 참석여부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W W		
7. 기타 투자판단0	∥ 참고혈	사항	101	ᆋ	6	8	2-1	0	
0	- 1								

【 채무자별 채무보증 잔액】

채무자	관계	채무보증잔액(원)	비고

⑪ 타인에 대한 채무면제 결정

□ 공시사유발생

o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o 회사와의 관계 란은 동일인, 친족(*배우자*, 혈족4촌 이내, 인척 3 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동일인측이 아닌 주주, 기타 등을 기재
- O 채무의 내용은 면제채무의 상환일, 상환조건, 면제채무의 금리 조건 기타 면제채무의 특이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o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는 해당 채무면제가 해당 회사의 당기 순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기재
- o 자본잠식법인은 자기자본에 최근의 자본금을 기재하고 기타 란에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의 자본금임을 기재
- o 공시사항의 결정을 이사회결의로 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외이사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법인의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를 기재
- O 상기 기재사항 외의 채무면제와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11〉

타인에 대한 채무면제 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망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I I			

1. 채무자		(회사와의 관계)
	채무의 내용	
	면제금액 (원)	
	- 자기자본 (원)	
2. 채무면제내역	- 자기자본 대비(%)	
	면제사유	
	면제(예정)일	
3. 회사에 미치는	영향	
4. 이사회결의일(공	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 (명)	
참석여부	불참 (명)	
- 감사(사외이사: 참석여부	가 아닌 감사위원)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일		
-	·정기	내위원회

② 채무인수 결정

□ 공시사유발생

o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o 회사와의 관계 란은 동일인, 친족(<u>배우자</u>, 혈족4촌 이내, 인척 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동일인측이 아닌 주주, 기타 등을 기재
- o 채무의 내용은 인수채무의 상환일, 상환조건, 인수채무의 금리조건 기타 인수채무의 특이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o 채무인수로 인한 영향에는 채무인수가 해당 회사의 당기순 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
- o 자본잠식법인은 자기자본에 최근의 자본금을 기재하고 기타 란에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의 자본금임을 기재
- o 공시사항의 결정을 이사회결의로 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외이사 및 감사(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법인의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를 기재
- o 상기 기재사항 외의 채무인수와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12〉

채무인수 결정

기업집단명	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원채무자	1. 원채무자				(회사와의 급	관계)		
2. 채권자						(회사와의 등	관계)	
	채무의 니	내용						
	인수금액	(원)						
3. 채무인수내역	- 자기	자본 (원	!)					
	- 자기자본 대비(%)							
	인수사유							
	인수(예정	덩)일	A STATE OF THE PARTY OF THE PAR		10			
4. 채무인수로 인	한 영향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mathcal{A}				
- 사외이사	참	석 (명)						
참석여부	불	참 (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일				0	0.	ō.		
C) (3			T			

③ 타인에 의한 당사의 채무면제

- □ 공시사유발생
 - o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채무를 면제받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o 회사와의 관계 란은 동일인, 친족(<u>배우자</u>, 혈족4촌 이내, 인척 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동일인측이 아닌 주주, 기타 등을 기재
- O 채무의 내용은 면제채무의 상환일, 상환조건, 면제채무의 금리조건 기타 면제채무의 특이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o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는 해당 채무면제가 회사의 당기순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기재
- O 자본잠식법인은 자기자본에 최근의 자본금을 기재하고 기타 란에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의 자본금임을 기재
- O 상기 기재사항 외의 당사의 채무면제와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13〉

타인에 의한 당사의 채무면제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채권자				(회사와의	의 관계)	
	채무의 내	용				
	면제금액	(원)				
2. 채무면제내역	- 자기	자본 (원)				
2. 제구인제대학	- 자기자	다본 대비(%)				
	면제사유					
	면제일					
3. 채무면제 확인일		A STATE OF THE PARTY OF THE PAR				
4. 회사에 미치는 영향	A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	할 사항					
※ 관련공시일	V			/4		

공정기래위원회

(A) 유상증자 결정

□ 공시사유발생

- O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신주발행의 방식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부여 결정 시 공시

- o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에 관한 결정일 현재의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기재
- o 증자방식에는 주주배정증자, 주주우선공모증자, 일반공모증자 또는 제3자배정증자 방식 중 해당 증자방식을 기재
- O 신주발행가액은 공시일 현재 발행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가액을,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발행 가액 산정방법 및 확정예정일 등을 기재
- o 주당 액면가 대비 할인율 또는 할증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기재 ⇒ {(주당 발행가 - 주당 액면가) / 주당 액면가} X 100
- o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는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
- 【제3자배정 대상자별 배정내역】의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에는 동일인, 친족(배우자, 혈족4촌 이내, 인척 3촌 이 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 비영리법 인, 계열회사, 동일인측이 아닌 주주, 기타 등을 기재. 비고란 에는 구체적인 관계를 별도로 기재
 - 예) 최대주주 홍길동의 배우자, 최대주주인 (주)ABC의 임원 등
- o 상기 기재사항 외의 신주권리내용의 특이사항, 신주권교부예정일, 단주처리방법, 자기주식 등 신주의 배정권이 없는 주식의 총 수, 배당기산일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 o 증권신고서 제출면제의 경우 면제사유를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14〉

5. 증자방식

유상증자 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사	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시즈이 조리이 스		보	통주 (주)				
1. 신주의 종류와 수		우	선주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	통주 (주)				
		우선주 (주)					
		시설자금 (원)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	경자금 (원)				
			'법인증권 특자금 (원)		10		
		ϽͿΕ	타자금 (원)				

※ 아래 4개의 양식 중 증자방식에 맞는 양식 사용



〈작성양식 14-1〉

유상증자 결정

〈주주배정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6. 선우 발행가역 	우선?	주 (원)	
7. 주당 액면가 대비 형	· 할인율 또는 할증워	율 (%)	
8. 신주배정기준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스	¦수 (주)		
10. 우리사주조합원 우	2선배정비율 (%)		
	0711775	시작일	
11 뒷아이저이	우리사주조합	종료일	
11. 청약예정일		시작일	
	구주주	종료일	
12. 납입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37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16. 이사회결의일(결정	!일)		0.5
		참석 (명)	
- 사외이사 참석여부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	석여부		
17. 증권신고서 제출다	H상 여부 및 면제 <i>/</i>		
18. 기타 투자판단에 :	참고할 사항		

〈작성양식 14-2〉

유상증자 결정

〈주주우선공모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6. 선구 필명가역	우선	주 (원)	
7. 주당 액면가 대비 할	인율 또는 할증	율 (%)	
8. 신주배정기준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	수 (주)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	선배정비율 (%)		
	우리사주조합	시작일	
	ナロハナエロ	종료일	
11. 청약예정일	구주주	시작일	
11. 성측에경르	777	종료일	
	01111 7 17	시작일	
	일반공모	종료일	
12. 납입일			
13. 신주의 배당기산일			
14. 신주권교부예정일	7-1-1	17116	141016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자회에자 참석어구	불침	남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작성양식 14-3〉

유상증자 결정

〈일반공모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0. 선구 글랑기ㅋ	우선	!주 (원)	
7. 주당 액면가 대비 할	인율 또는 할증	율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	!배정비율 (%)		
	우리사주조	시작일	
9. 청약예정일	합	종료일	
	이바고ㅁ	시작일	
	일반공모	종료일	
10. 납입일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12. 신주권교부예정일			
13. 이사회결의일(결정)	일)		
	참	석 (명)	
- 사외이사 참석여부	불	착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2 2 6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1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작성양식 14-4〉

유상증자 결정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우선주 (원)	
7. 주당 액면가 대비 할	인율 또는 할증율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	l관의 근거	
9. 납입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이사회결의일(결정)	일)	
	참석 (명)	
- 사외이사 참석여부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	여부	
13. 증권신고서 제출대	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14. 기타 투자판단에 침	· 당고할 사항	

【제3자배정 대상자별 배정내역】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신주배정주식수(주)	비고

⑤ 무상증자 결정

- □ 공시사유발생
 - O 무상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O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는 무상증자에 관한 결정일 현재의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기재
- o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는 소유주식 1주당 무상으로 배정할 신주의 수를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
- O 상기 기재사항 외의 신주권리내용의 특이사항, 신주권교부 예정일, 단주처리방법, 자기주식 등 신주의 배정권이 없는 주식의 총수, 배당기산일, 신주의 재원(주식발행초과금, 재평가 적립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기타 자본잉여금, 이익준비금, 재무개선 적립금 및 기타 해당 계정과목의 재원금액별로 구분)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15〉

무상증자 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신주의 경	조금이 스	5	년통주 (주)				
1. 연구의 8	5 TH T	5	우선주 (주)				
2. 1주당 액	면가액 (원)						
0 5111	ᄔᆌᅎᄭᅎᄼ	5	년통주 (주)				
3. 등사선 팀	발행주식총수	5	우선주 (주)				
4. 신주배정	기준일						
5		5	년통주 (주)				
5. 1구경 신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우선주 (<u>주</u>)				
6. 신주의 법	배당기산일						
7. 신주권교	부예정일						
8. 이사회결	의일(결정일)				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7.1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9. 기타 투자	다판단에 참고할	사항					
					- ATT - NO	177 - 777	

16 유무상증자 결정

- □ 공시사유발생
 - o 유무상증자(동시발생)에 관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O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에 관한 결정일 현재의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기재
- o 증자방식에는 주주배정증자, 주주우선공모증자, 일반공모증자 또는 제3자배정증자 방식 중 해당 증자방식을 기재
- O 신주발행가액은 공시일 현재 발행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 가액을,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발행가액 산정 방법 및 확정예정일 등을 기재
- o 주당 액면가 대비 할인율 또는 할증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기재 ⇒ {(주당 발행가 - 주당 액면가) / 주당 액면가} × 100
- o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는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
- O 【제3자배정 대상자별 배정내역】의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에는 동일인, 친족(<u>배우자</u>, 혈족4촌 이내, 인척 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 비영리법인, 계 열회사, 동일인측이 아닌 주주, 기타 등을 기재. 비고란에는 구체적인 관계를 별도로 기재
 - 예) 최대주주 홍길동의 배우자, 최대주주인 (주)ABC의 임원 등
- O 상기 기재사항 외의 신주권리내용의 특이사항, 신주권교부 예정일, 실권주처리계획, 배당기산일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 O 증권신고서 제출면제의 경우 면제사유를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16〉

유무상증자 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I .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1. CT-1 OT-1 T	우선주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		
3. 증자전	보통주 (주)	
발행주식총수 (주)	우선주 (주)	
	시설 <mark>자금 (원)</mark>	
4.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원)	
	타법인 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		

※ 아래 4개의 양식 중 증자방식에 맞는 양식 사용

〈작성양식 16-1〉

유무상증자 결정

〈주주배정증자의 경우〉

C 시조 바헤기에	보통주	두 (원)	
6. 신주 발행가액 우선주 (원)			
7. 주당 액면가 대비	할인율 또는 할증율	(%)	
8. 신주배정기준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	니수 (주)		
10. 우리사주조합원 유	2선배정비율 (%)		
	07111775	시작일	
44 원이에 되어	우리사주조합	종료일	
11. 청약예정일		시작일	
	구주주	종료일	
12. 납입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1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	
16. 이사회결의일(결정	[일)	121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7,12,917,1 2 1911			
- 감사(감사위원) 참	석여부 		
17. 증권신고서 제출대	배상 여부 및 면제시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작성양식 16-2〉

유무상증자 결정

〈주주우선공모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	주 (원)	
아. 선구 필명가의 우선주 (원)		주 (원)	
7. 주당 액면가 대비 할	인율 또는 할증율 ((%)	
8. 신주배정기준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	수 (주)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	 선배정비율 (%)		
	0111775	시작일	
	우리사주조합	종료일	
11 원야에졌이	구주주	시작일	
11. 청약예정일	777	종료일	
	OLHIZIC	시작일	
	일반공모	종료일	
12. 납입일			
13. 신주의 배당기산일			
14. 신주권교부예정일	7-1 T.J.	all o l	0.1-7-1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참석	덕 (명)	
- 사외이사 참석여부	불친	計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성			
17. 기타 투자판단에 침			

〈작성양식 16-3〉

유무상증자 결정

〈일반공모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	주 (원)	
0. 선구 글랑기ㅋ 	우선:	주 (원)	
7. 주당 액면가 대비 할	인율 또는 할증율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	배정비율 (%)		
	우리사주조합	시작일	
 9. 청약예정일	구니까구조합	종료일	
0. 0 TWIGE	OLHERO	시작일	
	일반공모	종료일	
10. 납입일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12. 신주권교부예정일			
13. 이사회결의일(결정)	일)		
	참석	ᅻ (명)	
- 사외이사 참석여부	불친	남 (명)	A 1 - L 1
- 감사(감사위원) 참석	410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성			
15. 기타 투자판단에 침	고할 사항		

〈작성양식 16-4〉

유무상증자 결정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c 시조 바취기에	보통주 (원)	
6. 신주 발행가액	우선주 (원)	
7. 주당 액면가 대비 할	인율 또는 할증율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	관의 근거	
9. 납입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이사회결의일(결정)	일)	
	참석 (명)	
- 사외이사 참석여부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		
13. 증권신고서 제출대	_	
14. 기타 투자판단에 침	고할 사항	

【제3자배정 대상자별 배정내역】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신주배정주식수(주)	비고	

〈작성양식 16-5〉

유무상증자 결정

Ⅱ. 무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1. 선구의 승규와 구	우선주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주)	
3. 중사선 필명구작중구	우선주 (주)	
4. 신주배정기준일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	보통주 (주)	
수	우선주 (주)	
6. 신주의 배당기산일		
7. 신주권교부예정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형	할 사항	

공정기래위원회

② 감자 결정

- □ 공시사유발생
 - O 감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O 감자비율(%)은 주식의 종류별 감자전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감자주식수의 비율을 기재하되, 주주별로 차등감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주주별 차등 감자비율을 각각 기재
- O 감자방법은 주식병합, 주식액면가액의 감액, 주식소각 등의 해당방법을 기재하고, 유상감자의 경우에는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감자주식의 매수방법 및 1주당 매수가격 등을 기재
- O 상기 기재사항 외의 채권자보호절차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17〉

감자 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우선주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전 (원)	감자	후 (원)
0. 급시선구 시즌급					
	구 분	감자건	전 (주)	감자	후 (주)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보통주(주)				
	우선주(주)				
E 71.TIUIO	보통주 (%)				
5. 감자비율	우선주 (%)				
6. 감자기준일			1		
7. 감자방법					
8. 감자사유	1				
	주주총회 예정일				
0 7170174	명의개서정지기간				
9. 감자일정	구주권제출기간				
	신주권교부예정일		-	Q.	
	시작일			- U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종료일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11010111 -111011	참석(명)				
- 사외이사 참석여부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	부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	할 사항				

⑧ 전환사채 발행 결정

- □ 공시사유발생
 - O 국내 또는 해외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사채의 종류는 국내 또는 해외, 기명식·무기명식, 보증·무보증, 담보·무담보 여부 등 내용을 기재
- o 기준환율에는 공시일 현재의 기준 또는 조정환율을 기재
- O 표면이자율 및 만기이자율은 그 이자율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이자율을, 공시일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율 결정 방식, 결정예정일 및 향후 해당 이자 조회방법 등을 기재
- O 사채발행방법은 공모 또는 사모로 구분하여 기재
- O 전환가액은 전환가액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확정가액을, 공시일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전환가액 산정 방법, 확정예정일 및 향후 전환가액 조회방법 등을 기재
- O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을 기재
- o 상기 기재사항 외의 Call Option, Put Option, 전환가액조정방법, 전환예정 주식수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 O 증권신고서 제출면제의 경우 면제사유를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해외발행으로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 제2항 각목의 조치 중 취하고자 하는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전환사채 및 그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을 1년 내에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취득할 수 없다는 뜻을 기재
- O 해외발행의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모든 대차거래에 대하여 주식대차거래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해당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을 자세하게 기재
- O 발행회사 대주주 및 관계회사 등이 해당 증권 인수인 또는 매입자 등과 체결한 주식대차 및 파생상품 계약 등 주요 계약 사항이 있는 경우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이를 자세하게 기재

공정기래위원회

〈작성양식 18〉

전환사채 발행 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I							
1. 사채의 종	5류				회차			종류	
2. 사채의 군	¹ 면총	등액 (원)							
		권민	변총액 (통	통화단위)					
2-1 (해외발	⊦eH)		기준횐	율					
2 1 (에되글	(6)		발행지	[역					
		해외성	상장시 시	장의 명칭					
			시설자금	(원)					
3. 자금조달	의		운영자금	(원)					
목적		타법인 위	우가증권	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4. 사채의 0	ا دا	Ī	포면이자	量 (%)					
4. AFMI U	12	E	반기이자원	量 (%)					
5. 사채만기	일					١			
6. 이자지급	방법								
7. 원금상환	방법								
8. 사채발행	방법				A A				
		전환비율 (%)			J.	Ŋ			
ㅇ 권들이		전환가액 (원/주)				/			
9. 전환에 관한 사형	51-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7				
전인 시점	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시작일					
		신완성-	구기간 [종료일					
10. 청약일									
11. 납입일		-1			1000 E		AL.	J.	
12. 대표주관	관회人				6.2	L	100	01	
13. 보증기관	<u> </u>	1 6						T.	
14. 이사회길	별의일	실(결정일)							
- 사외이사	ᆉ	4 어 ㅁ		참석 (명)					
- NIDOIN		7 W T		불참 (명)					
- 감사(감시	나위원	면) 참석여부	₫						
15. 증권신고	고서 .	제출대상 0	여부 및 E	면제시 사유					
16. 해당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 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 방식, 해당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17. 기타 투	자판	단에 참고형	할 사항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⑩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 □ 공시사유발생
 - O 국내 또는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이사회결의 또는 대표이사 등의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O 사채의 종류는 국내 또는 해외, 기명식·무기명식, 보증·무 보증, 담보·무담보 여부 등 내용을 기재
- o 기준환율에는 공시일 현재의 기준 또는 조정환율을 기재
- o 표면이자율 및 만기이자율은 그 이자율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이자율을, 공시일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율 결정방식, 결정예정일 및 향후 해당 이자 조회방법 등을 기재
- O 사채발행방법은 공모 또는 사모로 구분하여 기재
- O 행사가액은 행사가액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확정가액을, 공시일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행사가액 산정방법, 확정예정일 및 향후 행사가액 조회방법 등을 기재
- O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는 분리형과 비분리형으로 구분하여 기재
- o 신주대금 납입방법은 현금납입 또는 대용납입으로 구분하여 기재
-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을 기재
- o 상기 기재사항 외의 Call Option, Put Option, 행사가액조정 방법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 증권신고서 제출면제의 경우 면제사유를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해외발행으로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제2항 각목의 조치 중 취하고자 하는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 및 그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을 1년 내에「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취득할 수 없다는 뜻을 기재
- O 해외발행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모든 대차거래에 대하여 주식대차거래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을 자세하게 기재
- O 발행회사 대주주 및 관계회사 등이 해당 증권 인수인 또는 매입자 등과 체결한 주식대차 및 파생상품 계약 등 주요 계 약사항이 있는 경우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이를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19〉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기업집단명	<u>:</u>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사채의 종류				회차		종류	
2. 사채의 권면총	등액 (원)						
	권면	총액 (통	통화단위)				
2-1 (해외발행)		기준환					
2 1 (에되곤6)		발행지					
			장의 명칭				
		l설자금					
3. 자금조달의		은영자금 	• •				
목적			취득자금(원)				
		타자금 면이자a					
4. 사채의 이율		기이자원					
5. 사채만기일		2101XIE	= (70)				
6. 이자지급방법			/				
7. 원금상환방법							
8. 사채발행방법							
	100	행사비율	(%)	- 1	7		
	행사가액 (원/주)			- 7 A	7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1 11			
9. 신주인수권에	신주대금 납입방법						
관한 사항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권리행사기간 <u>시작일</u> 종료일						
10. 청약일				77% I	15 I		
11. 납입일	# 1/7			16.20	1000		
12. 대표주관회시		<u> </u>			-		
13. 보증기관	1/34 TLOL)						
14. 이사회결의일	C4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감사(감사위원	명)						
15. 증권신고서 기							
16. 해당 사채의 - 목적, 주식수,							
			인적사망, 메 환조건, 이율),				
상환 방식,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연계성, 수수료 등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② 영업양도 결정

- □ 공시사유발생
 - o 상법 제37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도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o 회사와의 관계 란은 동일인, 친족(*배우자*, 혈족4촌 이내, 인척 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동일인측이 아닌 주주, 기타 등을 기재
- o 영업양도 영향은 영업의 양도에 따라 영업, 자산, 매출액 등 경영상의 주요변화가 예상되는 사항 및 향후 사업계획 등을 기재
- o 주식매수청구권 사항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방법, 청구기간, 매수가격 관련사항 등 주요사항을 기재
- o 상기 기재사항 외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20〉

영업양도 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양도영업						
2. 양도영업 주요내용						
3. 양도가액 (원)						
4. 양도목적						
5. 양도예정일자						
6. 양수법인(회사와의 관계)					
7. 영업양도 영향						
8.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9. 주주총회 예정일자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į	참석(명)				
- 자회에자 참석여구	<u>l</u>	물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자산총9	H		
11. 양도대상 영업부문의 재무내용 (백만원)			매출액			
		부채액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함	할 사항		IOI	OJ-	J-1	

② 영업양수 결정

- □ 공시사유발생
 - o 상법 제37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수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o 회사와의 관계 란은 동일인, 친족(*배우자*, 혈족4촌 이내, 인척 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동일인측이 아닌 주주, 기타 등을 기재
- o 영업양수 영향은 영업의 양수에 따라 영업, 자산, 매출액 등 경영상의 주요변화가 예상되는 사항 및 향후 사업계획 등을 기재
- o 주식매수청구권 사항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방법, 청구기간, 매수가격 관련사항 등 주요사항을 기재
- o 상기 기재사항 외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21〉

영업양수 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양수영업								
2. 양수영업 주요내용	3							
3. 양수가액 (원)								
4. 양수목적								
5. 양수예정일자								
	회사명							
	자본금 (원)						
6. 양도법인내역	주요사업							
	본점소재지			1				
	관계							
7. 영업양수 영향								
8. 주식매수청구권 /	사항							
9. 주주총회 예정일기	Ct .			y I	y:			
10. 이사회결의일(결	정일)			7 1				
- 사외이사 참석	참석(명)							
여부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								
			자산총액	, etc. 1	P	당시	·대비(%)	
11. 양수대상 영업부	문의 재무내용	100	매출액				·대비(%)	
(백만원)			부채액				내대비(%) 나대비(%)	
10 215 5175	1 2	구세즉	- 1		5 /	I UI UI (/o)		
12. 기타 투자판단에	삼고알 사양							

② 영업전부의 임대·경영위임 등 결정

□ 공시사유발생

o 상법 제37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O 임대 등 유형은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체결의 해당 사항을 기재
- o 임대 등 영향은 임대 등에 따라 영업, 자산, 매출액 등 경영 상의 주요변화가 예상되는 사항 및 향후 사업계획 등을 기재
- o 회사와의 관계 란은 동일인, 친족(*배우자*, 혈족4촌 이내, 인척 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동일인측이 아닌 주주, 기타 등을 기재
- o 주식매수청구권 사항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방법, 청구기간, 매수가격 관련사항 등 주요사항을 기재
- o 상기 기재사항 외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22〉

영업전부의 임대·경영위임 등 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임대 등	유형							
2. 임대 등	영업 주요내용							
3. 임대 등	3. 임대 등 목적(이유)							
4. 임대 등	예정일자							
5. 임대 등	영향							
			회사명					
		,	가본금 (원)					
6. 임대 등 상대법인 내역	상대법인 내역	A	주요사업					
		E	르점소재지					
		회	사와의 관계					
7. 주주총회	예정일자			7.7				
8. 주식매수	청구권 사항							
9. 이사회결	의일(결정일)							
11010111	칸 II OI II		참석(명)					
- 사외이시	점적어두		불참(명)	1010171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10. 기타 투	자판단에 참고	할 사항						
				•				

② 영업전부의 임대·경영위임 등의 계약 변경·해지 결정

□ 공시사유발생

o 상법 제37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아 유형에는 영업전부의 임대계약의 변경, 영업전부의 임대계약의 해지, 영업전부에 대한 경영위임계약의 변경, 영업전부에 대한 경영위임계약의 해지,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o 계약 변경·해지에 따른 영향은 영업, 자산, 매출액 등 경영 상의 주요변화가 예상되는 사항 및 향후 사업계획 등을 기재
- o 회사와의 관계 란은 동일인, 친족(<u>배우자</u>, 혈족4촌 이내, 인척 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동일인측이 아닌 주주, 기타 등을 기재
- o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방법, 주식매수가격 산출방법 및 예정산출가액 등 주요사항을 기재
- O 상기 기재사항 외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23〉

영업전부의 임대·경영위임 등의 계약 변경·해지 결정

기업십단명 		외사병		공시일사		완던띱규	공정거래띱
1. 유형							
2. 계약 변경・해지의 주요내용							
3. 계약 변경・해지의 목적(이유)							
4. 계약 변경・해지 예정일자							
5. 계약 변경ㆍ해지에 따른 영향							
6. 계약 변경・해지의 상대방(회사와의 관계)							
7. 주주총회 예정일자							
8.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9. 이사회결	의일(결정일)						
11010111	· 참석여부		참석(명)				
- 사회에서 			불참(명)		2.1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일							

공정기래위원회

24 회사합병 결정

□ 공시사유발생

o 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합병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o 합병방법은 A사가 B사를 흡수합병, A사와 B사의 신설합병 등 해당 방법을 기재
- o 합병비율은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주식 1주당 교부할 존속회사주식수를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하고, 신설합 병의 경우 소멸회사주식 1주당 교부할 신설회사의 주식수를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
- o 회사와의 관계 란은 동일인, 친족(*배우자*, 혈족4촌 이내, 인척 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동일인측이 아닌 주주, 기타 등을 기재
- o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예정일자 등 관련 없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하고,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간이 또는 소규모합병임을 기재
- o 주식매수청구권 사항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방법, 청구기간, 매수가격 관련사항 등 주요사항을 기재
- o 상기 기재사항 외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24〉

회사합병 결정

기업집단명	회사	명	공시일지	-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합병방법						
2. 합병목적						
3. 합병비율						
4. 합병비율 산출근거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				
		우선주				
6. 합병 상대회사	회사명	ļ				
	주요사업	업				
	회사와의	관계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 (백만원)		자산총계		자본금	
			부채총계		마출액	
	회사명		자본총계		당기순이익	
7 114						
7. 신설 합병회사	주요사		7			
	재상장 0	(
	주주총회예					
	1 1 0 = 11	시작일				
	구주권제출기간	종료일				
	매매거래정지예 정기간	시작일		HO.1:	$_{\perp}$	
8. 합병일정		종료일		77	Y	
0. 0000	=11.71.71.01.01.71	시작일				
	채권자 이의 제 출기간	종료일				
	합병등기예?					
9. 주식매수청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참석(명)						
- 사외이사 참석여부		불참(명)				
	//트/미 /이/ 					
1=1 1 /						

② 회사분할 결정

- □ 공시사유발생
 - o 상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o 분할방법은 인적분할 또는 물적분할 등 해당사항을 기재
- o 분할비율은 존속회사주식 1주당 교부할 신설회사주식수를 소수 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
- O 감자비율은 감자전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감자주식수의 비율을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
- o 주식매수청구권 사항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방법, 청구기간, 매수가격 관련사항 등 주요사항을 기재
- o 상기 기재사항 외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25〉

회사분할 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분할방법						
2. 분할목적						
3. 분할비율						
4.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니	 용				
	회사	 }명				
5. 분할 후 존속회사의	자본금	급 (원)				
내용	주요	사업				
	회사	l 명				
6. 분할설립회사	자본글	<mark>(</mark> 원)				
	주요	사업				
	감자비	율 (%)				
7. 감자에 관한 사항	구주권제출기	시작일		15		
. –	구구전제 출기원	종료일	7.1			
8. 주주총회 예정	일	E .				
 9. 채권자 이의제:	추기가	시작일				
5. 세면서 어디세	= /1 C	종료일				
10. 분할기일			Lesson II	AL.	п. п	
11. 분할등기 예정	[일		Q-	0		
12. 이사회결의일	(결정일)			X.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77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13. 기타 투자판단	·에 참고할 사항					

② 회사분할합병 결정

- □ 공시사유발생
 - o 상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합병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공시요령

- o 분할합병방법은 OO사업부문을 분할하고, OO회사의 OO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분할합병, OO사업부문을 분할하여 OO 회사에 흡수분할합병 등 해당방법을 기재
- O 분할합병비율은 분할전회사의 주식 1주당 교부할 분할합병 후 존속회사의 주식수를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하되, 신설합병의 경우 분할전회사의 주식 1주당 교부할 분할합병후 신설회사의 주식수를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
- O 감자비율은 감자전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감자주식수의 비율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기재
- 이 회사와의 관계 란은 동일인, 친족(배우자, 혈족4촌 이내, 인척

 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 비영

 리법인, 계열회사, 동일인측이 아닌 주주, 기타 등을 기재
- o 주식매수청구권 사항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방법, 청구기간, 매수가격 관련사항 등 주요사항을 기재
- o 상기 기재사항 외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26〉

회사분할합병 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ŀ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분할합병	합병 방법								
2. 분할합병	목적								
3. 분할에 된	관한 시	항							
가. 분할로	이전	할 사업 닭	및 재산의	내용					
			회사망	\$					
나. 분할 후 존속회사			자본금	(원)					
			주요사	업					
			회사망	‡					
다. 분할설 회사	립		자본금	(원)					
기 기 기			주요사	업					
		2	망자비율	(%)		1			
라. 감자에 관한 사항		구주	권	시작일					
		제출기		종료일			V.		
4. 합병에 된	관한 人	 항	VIII		1				
			회사망	를 5		y	7		
			주요사	업		1	7		
가. 합병상	대	호	회사와의 관계						
회사			ичс т			산총계		자본금	
		의근사 원	업연도 재무내용 (백만원)			채총계		매출액	
				- 10	자	본총계		당기순이익	
나. 분할합		등의 종류의	가 _	보통주			W-	0	
수 (주))	1		우선주				Δ	
다. 합병신	선		회사망						
회사	2		자본금						
			주요사	업					
5. 분할합병									
6. 분할합병	기일								
7. 채권자 C	미의제	출기간		시작일					
		종료일							
8.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9. 주주총회 예정일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10. 이사외	크기크	(ヨゔヺ)		참석(명)					
- 사외이시	ト 참석	여부	-	- 삼석(영) - 불참(명)					
- 감사(감 <i>/</i>	나위워)참선(I) 브		20(0)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② 주식교환·이전 결정

- □ 공시사유발생
 - o 「상법」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상법」제360조의15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 공시

□ 공시요령

- o 구분에는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해당사항을 기재
- o 교환·이전 비율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 1주당 발행·교부되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수를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
- o 상기 기재사항 외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27〉

주식교환 · 이전 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구분							
	가. 회사	· 명					
	나. 대표	자				ED 1.07	
	다. 주요	요사업		100	OII.		
이 그림 이저		생주식총수(주)	보통	통주	1000	\odot	
2. 교환·이전 대상법인	и, а а	3T75T(T)	우선	선주			
41082	DI =1 =		자산	총계			
		근 사업연도 약재무내용	부채	총계			
		-제구네ㅎ 만원)	자본	총계			
			자	르금			
3. 교환·이전	비율						
4. 교환 • 이전	목적						
		주주총회 예정	정일자				
5. 교환ㆍ이전		구 주권제출	기간				
일정		매매거래정지여	정기간				
		교환ㆍ이전	일자				
6. 교환ㆍ이전	후 완전모호	회사명					
7. 이사회결의일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시되어사 전	ᄀᅜᅥᅮ		불침	(명)			
- 감사(감사위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8. 기타 투자판	단에 참고혈	할 사항					

28 해산사유 발생

□ 공시사유발생

- o 상법 제517조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해 산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공시
- O 다만, 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에 관한 사항을 해당 서식에 따라 공시한 경우 이를 해산사유신고에 갈음할 수 있음

□ 공시요령

- o 해산사유는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파산, 법원의 해산명령·판결, 해산결의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해산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O 상기 기재사항 외의 해산사유 발생 이후의 주요일정 및 대책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28〉

해산사유 발생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해산사유				
2. 해산내용				
3. 해산사유발생일(결정일)				
사이이지 참석이다	참석 (명)			
- 사외이사 참석여부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박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② 회생절차 개시결정

- □ 공시사유발생
 - o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때 공시

□ 공시요령

- o 회사와의 관계 란은 동일인, 친족(*배우자*, 혈족4촌 이내, 인척 3촌 이내), 기타친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4)와 5)에 해당하는 자], 임원,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동일인측이 아닌 주주, 기타 등을 기재
- o 상기사항 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의 향후 대책 및 일정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29〉

회생절차 개시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결정일자				
2. 관할법원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작일		
3. 결정 내용	신고기간	종료일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시작일		
	조사기간	종료일		
4. 관리인 성당	명(회사와의 관계)			
5. 확인(결정시	서 접수)일자			
6. 기타 투자된	판단에 참고할 사항			

③ 회생절차 종결결정

□ 공시사유발생

o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83조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때 공시

□ 공시요령

o 상기사항 외의 회생절차 종결결정 이후의 향후 대책 및 일정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30〉

회생절차 종결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결정일자								
2. 관할법원								
3. 결정내용	및 사유		- 10	_ 71		A 1		
4. 확인(결정	성서 접수)일자			1,	0	9-1	O I	
5. 향후일정	0 (
6. 기타 투자	다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일							

③ 회생절차 폐지결정

□ 공시사유발생

o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편제8장의 규정에 의한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때 공시

□ 공시요령

O 상기사항 외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의 향후 대책 및 일정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31〉

회생절차 폐지결정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 결정일자						
2. 관할법원						
3. 결정내용	및 사유		 	-		
4. 확인(결정	성서 접수)일자	.=		Q- '	Ō	
5. 향후일정	0 ()				
6. 기타 투자	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일					

②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 공시사유발생

o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주채권은행 관리절차의 개시 결정사실을 확인한 때 공시

□ 공시요령

- O 관리기관은 채권금융기관,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주채권은행 중 해당기관명을 기재
- o 상기사항 외의 채권은행 등에 의한 관리절차개시와 관련한 회사의 대책 및 일정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32〉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4 교기정원에서 거집이지		110101	
1. 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Y
2. 관리기관			
3. 관리기간			
4. 관리사유			
5. 관리범위 및 내용			
6. 확인일자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 사항		

③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중단

□ 공시사유발생

o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또는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주채권 은행 관리절차의 중단 결정사실을 확인한 때 공시

□ 공시요령

- o 관리기관은 채권금융기관,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주채권은행 중 해당기관명을 기재
- O 상기사항 외의 채권은행 등에 의한 관리절차중단과 관련한 회사의 대책 및 일정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33〉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중단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100	01 -		
1. 관리절차	중단 결정일자		$ \times $		Q	
2. 관리기관	0 1					
3. 관리기간						
4. 관리절차	중단사유					
5. 확인일자						
6. 기타 투자	다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일					

③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종료

□ 공시사유발생

o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또는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주채권은행 관리절차의 종료 결정사실을 확인한 때 공시

□ 공시요령

- o 관리기관은 채권금융기관,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주채권은행 중 해당기관명을 기재
- O 상기사항 외의 채권은행 등에 의한 관리절차해제와 관련한 회사의 대책 및 일정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작성양식 34〉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종료

기업집단명	회사명	공시일자	관련법규	공정거래법
(E.)				
1. 관리절차종료 결정일자				
2. 관리기관				
3. 관리기간				
4. 관리절차 종료사유				
5. 확인일자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혈	할 사항			
※ 관련공시일				

6 공시의무 위반 시 제재

- □ 공시대상회사가 공시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제130조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o 법 제37조에 근거하여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등 시정명령 부과
 - o 법 제130조 및 시행령 제94조 별표9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참고〉시행령 별표9 공시의무위반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24년 8월 개정)

	위반 유형		
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여부	누락 또는 거짓 공시 여부	과태료금액(단위: 만원)
공사하지 않은 경우	-	-	1,000
	공시기한까지 공시한 경우	누락 또는 거짓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	100 (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공시한 경우		누락 또는 거짓 공시한 경우	500
	공시기한을 넘긴 경우	누락 또는 거짓 공시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를 포함한다)	100 (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누락 또는 거짓 공시한 경우	1,000